



A Study of Descriptive Form on Title and Statement of Responsibility Area in British-American Cataloging Rules. <Ⅲ>

## 英美系 目錄規則의 發展과 書名著者 表示事項에 대한 記述形式의 變遷考 <Ⅲ>

李 春 澤  
 <昌原專門大學專任講師>

### \* 書名著者表示事項

書名著者表示事項은 8個事項 중 첫번째 事項으로서,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規則은 第2章의 單行本에 대한 書誌의 記述 중 2.1條에 規定되어 있다. 2.1條는 다시 2.1A 豫備規則, 2.1B 本書名, 2.1C 一般資料指定, 2.1D 對等書名, 2.1E 기타 書名情報, 2.1F 著者表示, 2.1G 綜合書名이 없는 著作 등 7個項으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먼저 用語의 概念을 闡明하고 그 다음은 論文의 性格上 이 版의 體系에 따라 上記한 順序대로 內容을 檢討함과 아울러 初版과 比較 分析하고자 한다.

書名著者表示事項은 종래에는 ‘書名の 記述’과 ‘著者表示’로 구분되어 자기 다른 事項으로 다루어졌으나 ISBD에서 그 範圍를 統合規定함에 따라 이 版에서도 書名著者表示事項이라는 統合된 한 事項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著者表示라는 用語로서 종래에는 단순히 ‘著者表示’(Author Statement)라 題하던 것을 ISBD에서부터 ‘責任性 表示’(Statement of Responsibility)라 題하였으며, 그에 대한 附錄의 用語解説을 보면 “責任性 表示는 記述되어야 할 著作으로부터 轉記된, 그 著作에 대한 知的인 內容이나 藝術的인 內容에 대해서 責任질 수 있는 個人이나 그것으로부터 그 內容이 發散되는 團體, 또는 著作의 內容에 대한 實行을 責任질 수 있는 個人이나 團體에 관한 表示”<sup>68)</sup>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用語의 變形과 그 定義는 종래의 漠然한 著者表示라는 概念을 더욱 明確하게 規定함과 동시에 著作에 대한 著者의 責任性을 더욱 強調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A. 豫備規則 :

豫備規則이란 基本規則에 앞서 豫備의 으로 알아야

할 規則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用語는 AACR 第2版에서 처음으로 使用한 用語이며, 이 豫備規則에서는 句讀點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AACR 改訂版의 가장 뚜렷한 變化 중 하나는 句讀點의 革新으로서 初版에서만 해도 句讀點에 관해서는 附錄으로 취급했던 것을 2版에서는 事項別로 句讀點法을 規定하여 全面的으로 改訂해서 本文規定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그 內容 중 所定의 基本的인 句讀點에 관해서는 1.0C條에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첫번째 事項을 除外한 각 事項이나, 註記 또는 標準番號事項의 記錄은, 그 事項이 새로운 文段으로서 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어리어드-스페이스-대시-스페이스(-)를 앞세워 적는다.”<sup>69)</sup> 이 條項은 事項과 事項을 연결하는 句讀點으로 初版의 경우는 특별히 規定하지 않고 다만 “몇가지 例外를 제외하고는 目錄著錄에 있어서의 句讀法은 標準的인 慣例에 따른다”고 規定하여, 다만 피어리어드와 스페이스로 區分했을 뿐이다.

② “所定의 句讀點表示에 있어서 쉼마-피어리어드-하이픈과 開閉括弧, 角括弧를 除外하고는 스페이스를 앞세워 적고 뒤에도 스페이스를 준다. 쉼마-피어리어드-하이픈-閉括弧-角括弧는 스페이스를 앞세워 적지 않으며, 하이픈-開括弧-角括弧 뒤에는 스페이스를 주지 않는다.” 이 規定은 既刊의 어느 規則에서도 規定한 적이 없던 特殊한 條項으로 事項과 要素 간의 明確한 구별과 컴퓨터 入力을 위한 記號로써 規定이 不可避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상 이전의 規則에서 비록 規定한 바는 없으나 전혀 使用하지도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前記

6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LA, 1978. p.571.

69) ibid. p.13.

했던 바와 같이 標準的인 慣例에 따라서 사용돼 온 것 뿐이다.

③ “첫번째 事項의 첫번째 要素와 새로운 節로 시작되는 事項의 첫번째 要素를 제외한 각 事項의 첫번째 要素는 피어리어드—스페이스—대시—스페이스를 앞세워 적는다. 그러나 그 要素를 記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번째 要素는 그 要素(省略된 要素)를 위한 所定の 句讀點 대신에 피어리어드—스페이스—대시—스페이스를 앞세워 적는다.” 이 경우는 한 事項의 첫번째 要素가 記述되지 않고 그 다음의 두번째 要素가 그 事項의 첫번째 要素가 될 때의 記述方法으로 그 內容은 사실상 前記한 句讀點에 관한 첫번째 事項과 동일하다.

④ “所定の 情報源 이외에서 提取한 情報를 記錄할 경우에 使用되는 ‘語句의 插入’은 角括弧에 넣어 表示하며, 推測的인 語句의 插入은 角括弧 내에 疑問符號를 附記함에 의해서 表示한다. 要素의 省略部分은 省略符號(...)로 表示하며, 省略符號 前後에는 스페이스를 둔다. 個個의 項目을 記述하는데 適用되지 않는 事項이나 包含句讀點도 역시 省略한다. 한 事項이나 要素의 省略은 省略符號로 表示하지 않는다.” 이상의 規定 중 에서 前者는 句讀點에 관한 規定은 아니지만 初版의 “標題紙나 또는 그것의 代用으로 쓰인 것에 表示되지 아니 한 사항으로써 記入體에 插入한 것은 角括弧로 묶는다.”는 條項과 132條 A項의 “記入體에 記載하도록 規定된 要素를 다른 出處로부터 補記하였을 경우에는 角括弧에 插入하며 …… 만일 附加事項이 推測的인 것일 경우에는 疑問符號로 表示한다.” 에로 [Dublin ? N.H] Dublin[N.HP]는 規則과 동일한 것이다.

省略符號의 사용에 관한 規則은 初版에서는 “書名·副書名 또는 別書名으로부터의 省略을 表示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각 該當要素를 規定했으나 2版에서는 이를 단순히 要素의 省略部分이라고 表現하여 그 範圍를 한층 더 넓혔으며, 省略符號 前後에는 스페이스를 주도도록 하였다. 省略要素 및 그에 따른 句讀點 省略問題는 前項에서 記述한 것을 사실상 자세히 說明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한 事項 내의 隣接要素를 角括弧에 插入해야 할 경우에는 그 要素 중의 하나가 항상 單獨的인 括弧를 사용해야 하는 一般資料指定表示를 제외하고는 한 세트의 角括弧에 插入하지만, 隣接要素가 다른 事項일 경우에는 각 要素를 각 세트의 角括弧에 插入한다. 이 規定도 역시 初版에는 없었으나 기실은 慣例에 따라 그렇게 사용하던 것을 規則化한 것에 불과하다.

⑥ “피어리어드나 省略符로 끝나는 略語로 된 要素와 다음 要素가 피어리어드나 피어리어드로 시작되는 句

讀點일 경우에, 所定の 句讀點을 形成하거나 시작하는 피어리어드는 省略한다.” 이 規定은 새로운 句讀點의 規定으로서 야기되는 問題, 즉 不必要한 二重句讀點과 그에 따른 目錄의 複雜과 混亂을 다소나마 피하기 위한 規則으로 생각된다.

⑦ “句讀點이 한 要素의 中間이나 마지막에 位置할 때에는 存續시키며 正常的인 스페이스를 준다. 所定の 句讀點은 비록 二重句讀點이 되는 結果를 가져올지라도 항상 附記한다.” 前者의 경우는 初版에 規定한 바 없는 新規條項이나 內容은 변한 것이 없으며, 後者の 경우는 初版의 規則에서는 “明白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한 句讀點의 重複은 피한다.”<sup>70)</sup>라고 規定하여 記述上 不可避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句讀點의 重複을 가급적 抑制하였다. 그러나 2版의 規則에서는 二重句讀點이 되는 結果가 되더라도 항상 附記한다고 規定한 것은 확실히 큰 變化이며, 이는 ISBD가 規定한 새로운 句讀點의 採用으로 變更할 수 밖에 없었던 條項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書名著者表示事項에만 關聯된 句讀點은 다음과 같다.

2.1A條에 ① “補遺(supplement)나 部分(section)은 피어리어드를 앞세워 적는다.” 이 規則은 新規條項으로 初版에서는 “書名의 主要部分과 附隨部分을 區別하기 위하여는 쉼표를 使用한다”라고 아주 包括的으로 定하던 것을 각각의 事項을 細分해서 그 事項에 맞는 句讀點을 適用하도록 規定하였다.

② “一般資料指定表示는 角括弧에 插入한다.” 이 事項 역시 2版에서 새로 規定한 條項으로서 任意的인 追加事項으로서 特할 경우에는 항상 角括弧에 插入記載한다고 規定한 것이다.

③ “각 對等書名은 等號를 앞세워 적는다”는 規定과 “기타 書名情報의 單位(unit)는 콜론을 앞세워 적는다”는 條項도 모두 新規條項으로서 종래의 規則에서는 볼 수 없었던 條項들이다.

著者表示에 대한 句讀點은 우선 “最初의 著者表示는 斜線을 앞세워 적는다”<sup>71)</sup>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에 “一般的으로 書名을 著者表示로부터 區別하기 위하여 쉼표를 사용한다”고 했던 것을 斜線의 方式을 導入함으로써 一大變革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連續되는 著者表示는 세미콜론을 앞세워 적는다.” 이 條項은 語句만을 달리 表現하였을 뿐 內容은 初版의 그것과 동일하며, 다만 종래의 “쉼표 또

7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orth American Text. op. cit. p.369.

7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nd ed. op. cit. p.17.

는 물론이 어떤 경우에는 優先的으로 쓰일 수 있다”는 例外條項은 削除되었다.

이상에서 考察한 規則들이 書名著者表示事項에 관련된 句讀點 條項들로서 이들은 世界書誌統整이라는 大前提와 目錄의 機械可讀形態로의 變換을 主目的으로 書誌物의 國際交換 등에 따라 言語障礙를 克服하고, 目錄의 相互交換 및 機械可讀形態로의 變換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傳統的이고 慣例의인 중견의 句讀點體制를 完全히 改革하여 새로운 形態의 句讀點體制를 創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看過할 수 없는 事項은 文段바꿈(paragraphing)과 인덴션에 관한 規定이다. 初版의 경우는 文段바꿈에 대해서 單行本記述에 관한 一般規則 중 130. 記述의 組織條에 A.B.C. 項으로 나누어 規定했던 것을 2版에서는 ISBD와 마찬가지로 原則的으로 單一文段記入으로 하여 文段바꿈과 인덴션事項을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目錄記述上 모든 事項을 하나의 文段으로 記入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1.0C條의 “첫번째 事項을 제외한 각 事項이나 註記 또는 標準番號 등과 같은 事項의 記述은 그 事項이 새로운 文段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規定은 약간 考慮해 볼 餘地가 있다. 이 文句 중 첫번째 事項을 제외한 다른 事項(版次事項·出版事項·對照事項·시리즈事項)은 각 事項이라는 한 單語로 表現하고, 유독 註記事項과 標準番號事項만은 각각 別途로 表現한 意圖가 애매하며, 또한 사실상 “그 事項이 새로운 文段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規定과 ③번항의 “새로운 文段으로 시작되는 事項의 첫번째 要素를 제외한”이라는 規定은 不必要한 規定인 것이다. 그리고 이 規則 머리말의 根據資料項目에서 밝힌 바와 같이 “第1부의 關聯部分은 ISBD(M)에 基礎를 두었다”는 ISBD(M) 역시 “피어리어드-스페이스-하이픈-스페이스(. -)는 각 事項을 다음과 같이 區分짓는데 使用한다.

“文段바꿈이나 크기 또는 인덴션에 의해 앞의 事項과 明確하게 分離된 경우에는 중간에 끼는 피어리어드-스페이스-하이픈-스페이스는 省略하거나 또는 앞의 事項에 주어진 마침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sup>72)</sup>고 規定하여 文段바꿈의 可能性만을 示唆하고 그 具體的인 것은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事項들은 單一文段으로 記入한다 할지라도 註記事項과 標準圖書番號·裝幀·價格事項은 獨立的인 文段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뒷받침하는 根據로서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International Cataloging and ISBD<sup>73)</su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記事는 U.S. Library of Congress의 Cataloging Service Bulletin의 例<sup>74)</sup>를 引用하여 “根本的으로 모든 事項은 單一文段記入으로 되어 있어 書名の 시작으로 부터 마지막의 시리즈 事項까지 文段의 인덴션을 規定하지 않고 있다. 註記事項과 ISBN事項은 새로운 文段으로 시작하며, 각각의 註記事項은 獨立的인 文段으로 記入할 수도 있다. ISBD體系와 現行美國方式과의 가장 뚜렷한 差異點은 書名·著者·版次·出版事項과 더불어 동일한 文段에 對照事項과 시리즈事項을 包含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著錄의 本體(the body of the entry)의 概念을 變質시켰다”고 하여 註記事項과 ISBN事項을 分離시키고 있으며, ISBD(M)의 例示<sup>75)</sup>에서도 시리즈事項까지를 한 文段으로 묶고 註記事項과 ISBN 및 裝幀·價格事項만을 別行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資料를 綜合해 보면 2版이 각 事項의 文段바꿈과 인덴션關係의 規定을 削除한 것은 분명히 著錄體의 概念을 變質시킨 것은 사실이나 文段바꿈과 인덴션 關係를 完全히 무시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圖書館과 目錄作成者에 따라서는 傳統的인 慣例에 따르거나 최소한 註記事項과 ISBN 및 購買可否事項만은 獨立的인 文段으로 行을 달리해서 記錄할 수도 있고 視覺的인 面을 考慮할 때 單一文段記入으로 하는 것 보다는도 어찌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Hunter는 “標準化를 위한 세번째 條件은 指定된 句讀點이며, 첫번째 事項과는 달리 각 事項은 피어리어드-스페이스-대시-스페이스를 앞세워 적는다. 그러나 代案的으로 한 事項은 새로운 文段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文段바꿈은 가끔 形態的 記述事項과 註記事項 및 標準番號事項을 위해서도 利用될 수 있다”<sup>76)</sup>고 하여 註記事項과 ISBN 및 購買可否事項 이외의 形態的 記述事項까지도 別途의 文段으로 記入할

72)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First Standard Edition.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p.4.

73) Sinkankas, George M. and Daily, Jay E., International Cataloging an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12.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74. p.282.

74) U.S. Library of Congress, Processing Department. Cataloging Service Bulletin, 105,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November. 1972. pp.8~14.

75)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op. cit. pp.33~34.

76) Hunter, Eric J., Amiet, Ma Fla, AACR2 an introduction to the second edition of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ondon, Clive Bingley, 1979. p.18, p.24.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B. 本 書 名 :**

書名에 대한 規則은 完全히 再整理되어 本書名·對等書名·기타 書名情報로 區分하여 다루어졌으며, 用語에 대한 概念도 이전의 그것들과는 判異하게 定義되고 있다.

本書名은 書名著者表示事項의 첫번째 要素로서 附錄의 用語解説을 보면 “한 著作의 主要 名稱으로 別書名은 이에 屬하나 對等書名과 기타 書名情報는 제외된다”<sup>77)</sup>고 定義하고 있다. 특히 別書名에 대해서는 初版에서는 別項으로 다루었고, 豫備版에서는 기타 書名으로 다루었으나 2版에서는 이를 本書名에 包含시키고 있다. 이에 屬하는 規定들을 概觀하고 初版과 比較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1B1 : “本書名記入에 있어서 語法, 順序, 綴字에 대하여는 正確하게 轉寫하라. 그러나 句讀點 및 大文字 사용에 대해서는 必須의인 것은 아니다. 主情報源에 나타나 있는 發音符號나 기타 判讀記號도 表示하라.”<sup>78)</sup> 이 規定은 初版의 133條 A項의 一般規則에 해당하는 條項으로 “만일 액센트나 우프라우트 및 기타 判讀記號가 標題紙에 省略되었을 경우에는 本文의 用例와 一致하도록 附記한다”는 條項에서 우프라우트만을 削除하여 記述에 관한 一般規則 1.0G의 액센트 및 기타 判讀記號條로 轉置하였고, “印刷上의 特色은 無視한다”는 條項은 完全히 削除하였다. 이 條項은 十九世紀 및 二十世紀에 著述된 著作에 關된條項으로 豫備版에서는 1500年 이후에 著述된 著作<sup>79)</sup>으로 範圍를 擴大하였다가 2版에서는 完全히 削除해 버리므로 해서 이제까지 U대신 V로, j 대신 i를 使用하던 것과 獨日語의 母音 위에 있는 e를 우프라우트로 代替하던 것 등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한편 初版에서 “古書體이거나 裝飾의인 것 등으로 看做되는 漢字는 가능하면 「康熙字典」이나 우에다(上田)의 「大字典」에 있는 것과 一致되는 漢字를 使用한다. 그러나 略字는 그대로 轉記한다”는 條項도 함께 削除하여, 本書名記入에 있어서는 “語法, 順序, 綴字에 대해서는 正確하게 轉寫한다”는 規定에만 따라서 例外 없이 그대로 轉寫하도록 規定하였다. 그리고 “行末(line ending)은 稀貴本の 두 版 또는 여러 發行을 區別하는 기타 모든 方法이 不適切할 경우나 稀貴本の 書名이 詩文形式으로 印刷되었다는 것을 表示하기 위한 경우에만 使用한다.” 이 條項도 豫備版에서만 해도 “行末은 한 著作의 書名이 詩文形式으로 印刷되어 있는 것을 表示하거나 稀貴本の 두 版 또는 여러 發行을 區別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없이 두 개의 斜線으로 表示하나 이 경우는 기타 모든 方法

이 不適切할 경우에 限한다”<sup>80)</sup>고 改訂하였으나 2版에서는 完全히 削除되었다. 이러한 規則의 變化는 不必要한 例外規定을 削除함으로써 規則의 使用者에게는 混亂을 輕減시켜 주고 아울러 規則 自體도 簡素化하게 되었다.

“別書名은 本書名의 一部分이다. 컴마와 함께 ‘또는’(or)이라는 單語(또는 그것의 相當語)를 使用해서 첫번째 書名部分 다음에 記錄하며, 別書名의 첫 單語는 大文字로 하라.”<sup>81)</sup> 이 規則은 初版의 133條 G項에 해당하는 條項으로 이전에는 別書名이라는 이름으로 本書名과는 다른 獨立된 概念으로 使用하였으나 이 規則에서는 本書名의 一部分으로 취급하였다.

**C. 任意的인 追加事項. 一般資料指定表示 :**

一般資料指定表示에 대한 概念은 目錄規則 중에서는 第2版에서 最初로 採擇하였으며, ISBD(G)에 根據<sup>82)</sup>를 두고 있는 事項이다.

이것은 情報傳達媒體의 多樣化로 인하여 급격히 增加하는 特殊形態資料와 一般圖書形態의 資料에 대한 正確한 情報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版에서는 任意的인 追加事項으로 規定하여 英國과 北美에서 使用하도록 勸獎<sup>83)</sup>하고 있다. 우선 用語解説을 보면 一般資料指定表示는 “그 著作이 속해 있는 資料의 部類를 指示하는 用語로서, 예를 들면 音盤記錄物 등이다”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事項은 圖書館이나 기타 書誌作成機關들이 취급할 수 있는 모든 資料를 2개의 表<sup>84)</sup>로 分類하여 編目過程에서 이를 採擇할 경우 英國機關들은 表1의 用語를, 北美의 機關들은 表2의 用語를 使用하도록 勸獎하고 있다. 만일, 이 事項을 英語使用圈 이외의 國家에서 適用한다면 2개의 表 중 하나를 選擇하여 直接的으로는 英語로 된 資料에 適用할 수 있을 것이며, 間接적으로는 이 表를 適當히 번역하여 自國의 出版物

7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nd ed. op. cit p.571.

78) ibid. p.18.

7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apter 6 “Separately Published Monographs” Incorporating chapter 9, “Photographic and Other Reproduction,” and revised to accor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Monographs). Chicago, ALA, 1974. 9. 15.

80) ibid. p.16.

8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nd ed. op. cit p.18.

82)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ISB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Annotated Tex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8. p.6.

8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nd ed. op. cit. p.20.

84) loc. cit.

에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記入內容을 살펴보면 한 著作이 選擇된 表 내의 한 範疇에 속하는 資料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本書名 다음에 該當指定事項表示를 附記하고, 綜合書名을 가지고 있지 않는 著作일 경우에는 同一한 著者에 의한 一羣의 書名 중 마지막 書名 바로 다음에 該當指定事項表示를 附記하며, 만일 著者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相異한 著者의 書名群에 所屬된 마지막 著者表示 다음에 該當指定事項表示를 附記한다(1.1C2). 그리고 만일, microform으로서의 text나 슬라이드로 된 地圖와 같이 著作이 本質의으로 다른 資料로 表現된 著作의 한 資料로 複製된 것이라면 記述되고 있는 資料에 해당하는 一般資料指定事項表示를 준다(1.1C3). 이러한 예로는 슬라이드로 된 地圖일 경우 슬라이드에 該當하는 指定事項表示를 주는 것 등이다. 그러나 만일 한 著作에 選擇된 表 내에 있는 틀이나 또는 그 이상의 範疇 내에 속하는 部分을 包含하고 있으면서 이들 가운데 그 著作의 支配의인 要素가 없는 경우에는 表 1을 使用하는 경우 multimedia를, 表 2를 使用하는 경우 kit를 指定事項으로 表示(1.1C4)하도록 하였다.

#### D. 對等書名 :

對等書名에 관한 概念은 ISBD에 根據하여 規定한 事項으로 “다른 言語와 또는 字體로 된 本書名”<sup>85)</sup>을 意味한다. 對等書名은 두 가지 이상의 言語로 쓰여진 著作의 標題紙에 記載되어 있으며 一般의으로 本書名은 自國語出版物로 되어 있고 外國語로 된 對等書名을 帶同한다.

두 가지 이상의 言語와 字體로 記載된 本書名 중 1.1B 8條에 따라 本書名이 決定되면 對等書名은 主情報源의 配置나 順序에 의하여서 指示된 順으로 記錄(1.1D1)하며, 記述方式은 段階別로 나누어서 記入하도록 規定하였다.

1.1D2 : “第2段階 記述을 適用할 경우에는, 첫번째 對等書名을 記入하라. 後續對等書名 중 英語로 된 것이 있으면 記錄하라. 만일 英語로 된 書名도 없고, 本書名도 非로마字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佛語, 獨逸語, 스페인語, 라틴語, 기타 로마알파벳으로 된 言語의 順으로 對等書名을 記錄하라. 第3段階 記述에 있어서는 1.1B條에 따라 主情報源에 나타나 있는 모든 對等書名을 轉記하라”고 規定하였다. 再言하면 第2段階 記述을 할 경우에는 첫번째 對等書名을 반드시 記入하며, 그 다음에는 英語로 된 對等書名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記入하고, 英語로 된 對等書名도 없고, 本書名도 非로마字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佛語, 獨逸語, 스페인語, 라틴어 등의 順序로 記述하도록 하였으며, 第3段階 記

述에 있어서는 모든 對等書名을 모두 記錄하도록 規定한 것이다.

1.1D3: 原書名의 言語가 主情報源에 記載된 本書名의 言語와 相異할 경우에는 著作內容의 全部나 혹은 一部가 原書名과 같은 言語로 되어 있거나, 原書名이 主情報源 내의 本書名 앞에 記載되어 있을 경우에는 對等書名으로 記錄하며, 原書名이 本書名과 같은 言語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타 書名情報로 記錄하라.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 原書名은 註記로 한다”는 規定은 初版의 133條 C項 2番의 附加의인 書名을 記載하는 경우 “그것이 原書名일 때”라고 간략하게 規定하던 것을 詳細히 規定하며 原書名일 경우 언제나 附記하던 것을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對等書名, 其他書名情報 또는 註記 등으로 記錄하도록 規定하였다.

1.1D4: “主情報源 이외에 나타난 對等書名은 註記로 記錄하라”는 規定은 上記條의 기타 모든 경우의 한 具體的인 例示라고 볼 수 있다.

#### E. 其他書名情報 :

其他書名情報에 대한 概念은 ISBD(G)<sup>86)</sup>에 根據를 둔 것으로서, 豫備版에서만 해도 ‘對等書名, 其他書名 및 其他書名情報’<sup>87)</sup>로 하여 單一要素로 취급하던 것을, ISBD(G)에서부터 對等書名과 其他書名 및 其他書名情報로 分離하여 別個의 要素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豫備版에서만 해도 別書名과 副書名 등의 概念으로 다루어지던 其他書名<sup>88)</sup>을 이 版에서는 完全히 分離하여 別書名은 本書名의 一部分으로 취급하고 일반적으로 美國社會에서 副書名이라고 알려진 其他書名<sup>89)</sup>만을 其他書名情報의 概念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初版의 規則에서 “副書名은 書名의 一部分으로 看做하며 本書名과 동일한 方法으로 目錄著錄으로 轉寫”<sup>90)</sup>하던 것을 本書名으로부터 完全히 分離하여 其他書名情報라는 獨立된 要素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用語解說을 보면 副書名은 “本書名이나 對等書名 이외에 著作에 記載된 어느 書名, 또는 本書名, 對等書名 또는 其他書名에 관련되어 記載된 어느 節, 著作의 性格, 內容 등과 그 生産이나 出版의 理由, 動機를 나타내는 節”<sup>91)</sup>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著作의 特性이나 一般의인 內容, 혹은 그 著作出版의 動

85) *ibid.* p.568.

86)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op. cit.* p.7.

8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4. *op. cit.* p.18.

88) *ibid.* p.115.

89) Sinkankas, George M. and Daily, Jay E., *op. cit.* p.286.

9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op. cit.* p.197.

9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op. cit.* p.568.

機와 관련된 情報라도 그러한 情報가 標題紙面에 記載되어 있을 경우에는 註記로 記入하는 것보다는 其他 書名情報로 記入하도록 改訂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記述의 細則을 보면 主情報源에 記載된 모든 其他 書名情報는 1.1B條의 規則에 따라 轉記(1.1E1)하며 主情報源의 位置나 順序에 의해서 指示된 順序대로 記錄한다(1.1E2). 其他 書名情報가 너무 긴 경우에는 註記로 하거나 要約해서 記述할 수 있지만, 要約할 경우에는 必須의인 情報의 喪失이 없을 경우에 한하고, 처음 다섯 單語는 결코 省略할 수 없으며, 省略할 경우에는 省略符號에 의해서 表示한다(1.1E3). 만일 其他 書名情報가 著者表示나 出版者名, 配布者名 등을 包含하고 있고, 그 著者表示, 出版者名, 配布者名이 其他 書名情報의 必須의인 것일 경우 그대로 轉記한다(1.1E4).

그리고 또 本書名이나 對等書名 위에 나와 그것에 관련되는 其他 書名情報는 轉記하며, 만일 對等書名이 없고 其他 書名情報가 두 가지 이상의 言語나 字體로 記載되어 있는 경우에는 其他 書名情報는 本書名の 言語나 字體로 된 것으로 記入하고, 만일 이 基準을 適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번째 記載된 것으로 記入하여, 任意的으로 다른 言語로 된 其他 書名情報를 追加할 수 있다(1.1F5). 만일 本書名이 說明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本書名の 言語로 其他 書名情報로써 簡略하게 附記한다(1.1E6).

이상의 規則을 綜合해 보면 첫째 用語의 概念을 變質시킴으로써 初版에서 別書名과 副書名으로서 別項目으로 취급되던 것이 각각 本書名과 其他 書名情報로 다루어짐에 따라 關聯條項들이 削除되었으며, 둘째 其他 書名情報가 너무 긴 경우에는 要約할 수 있는 餘地를 남김으로써 目錄의 지나친 複雜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任意的으로 다른 言語로 된 其他 書名情報를 追加할 수 있도록 하여 目錄의 國際性을 높이는 데 寄與하였다.

**F. 著者表示 :**

著者表示는 書名著者表示事項의 마지막 要素로써 著作에 관련된 모든 著者表示를 記述하는 要素이며, 그 細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F1: “著者表示는 그 著作에 支配的으로 記載된 것을 記載되어 있는 形態로 記錄하라. 著者表示를 만일 主情報源 이외의 情報源에서 취급하였다면 角括弧에 挿入하라.”

1.1F2: “만일 著作에 支配的으로 表現된 著者表示가 없을 경우에는 그 著作의 內容으로부터 抽出하는 것도 아니고 組立하는 것도 아니다. 그 著作 내에 支配的으로 表現된 著者表示가 없는 경우에는 書名著者表示事

項에서 제외하며, 만일 그러한 表示가 필요할 경우에는 註記로 내어주라”<sup>92)</sup>는 規則은 一般的인 著者の 表示와 著者表示를 省略하는 경우를 規定한 條項이다.

이것은 初版 第134條 A項에 該當하는 것으로 8개의 例示를 들고, 그 例示와 같이 그것이 書名の 一部分으로 必須的인 경우를 제외하고 一般的인 경우는 省略한다는 規定을 完全히 削除하고 새로 規定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形態의 著者表示는 著作에 記載되어 있는 形態 그대로 記錄하며, 만일 支配的으로 記載된 著者表示가 없을 경우에는 省略하고, 그러한 表示가 필요한 경우에만 註記로 내어 주도록 規定하여 그 內容과 規則을 簡略化하였다.

1.1F3: “著者表示가 主情報源 내에서 本書名の 앞에 나온 경우에는 轉位에 의해서 語尾變化가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을 필요한 位置로 轉置시킨다”<sup>93)</sup>는 條項은 初版의 第134條 B項의 轉置條에 해당하는 것으로 “標題紙에 있는 그 著者表示가 書名 다음에 있지 않을 경우”를 “本書名の 앞에 나올 경우”로만 限定하여 轉置의 範圍를 縮小規定하였다.

1.1F4: “동일한 機能이나 相異한 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 된 것은 2인 이상인 團體인 著者表示로 記錄한다”<sup>94)</sup>는 規定은 新設條項으로서 著者的 機能에 關係하지 않고, 모두를 單一著者表示로 記錄하도록 하였다.

1.1F5: “동일한 機能을 遂行하고 있거나, 동일한 水準의 책임을 갖는 3인 이상의 著者나 團體가 單一著者表示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사람이나 團體를 제외하고는 모두 省略한다. 省略은 省略符號(…)로 表示하며, et al(非로마體에서는 그것의 相當語)를 角括弧에 넣어 附記한다”<sup>95)</sup>는 規定은 初版의 第134條 D項의 共著者關係事項으로 “標題紙가 英語로 되었을 경우 ‘and others’라는 語句를 使用한다”는 英語強調條項을 削除하여 로마體를 사용하는 國家에서는 言語나 文字에 關係 없이 省略符號(…)와 ‘et al’을 角括弧에 넣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기타 例外條項을 削除하여 特定語에 대한 規定을 없애고 “非로마體에서는 그것의 相當語”라는 句節의 挿入으로 非로마體를 사용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裁量權을 附與한 이 條項은 크게 變貌한 條項의 하나이다.

1.1F6: “만일 著者表示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主情報源의 配置에 의해서나 그들의 順序에 의해서 指示된

9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op. cit. p.23.

93) loc. cit.

94) loc. cit.

95) ibid. p.24.

順序로 記錄하라. 만일 그 順序와 配置가 順序를 決定하는데 不充分하다거나 曖昧模糊하다면 著者表示는 最善策이 될 수 있는 順序대로 記錄하라. 또한 著者表示가 主情報源 이외의 情報源에 記載되어 있다면 그들을 最善策이 될 수 있는 順序로 記錄하라.”<sup>96)</sup> 이 條項은 新規條項으로 著者表示가 2人 이상일 경우 그들의 記入順序를 決定하는 規則으로서 主情報源의 配置나 順序에 따르며, 그 외에는 다만 ‘最善策이 될 수 있는 대로’라고만 規定하여, 規則 自體는 融通性과 包括性을 가지게 되었지만 目錄作成者는 스스로 最善策이 될 수 있는 方法을 摸索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CR 第2版은 Panizzi의 規則에서 비롯된 모든 現代目錄規則을 總網羅하여 계승하였고, 특히 ISBD의 영향을 받아 모든 規則들을 再整理하고 體系를 바로 하였다. 특히 機械化處理를 위한 革新的인 句讀點의 改革과 書誌記述事項의 再組織으로 書誌記述形式의 國際的 標準化에 寄與하게 되었다.

## 結 論

書誌統整의 原始的인 方法은 最初로 圖書館이 建立된 이래로 存在하여 왔다. 그러므로 目錄作成의 歷史도 圖書館史만큼이나 長久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古代의 目錄作成史 역시 確實한 根據資料를 구할 수 없는 架空의인 狀態이다. 그러나 現存하는 英美系의 目錄規則은 주로 다음과 같이 發展의 主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現存하는 最初의 完전한 目錄規則으로는 1841年 Panizzi卿에 의해서 編纂된 大英博物館圖書館의 目錄規則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는 그 후 1852年 美國의 Jewett目錄規則, 셋째 1876年の Cutter의 辭典體目錄規則, 넷째 1949年の ALA目錄規則, 다섯째 1967年の 英美目錄規則 등으로 發展하였으며, 여섯째 1960年代末부터 일기 시작한 書誌記述形式의 統一化運動으로 ISBD의 出現을 보게 되었고, 끝으로 1978년에는 英美目錄規則 第2版이 出刊되기에 이르렀다.

Panizzi의 目錄規則은 본래 大英博物館의 藏書를 整理하기 위해서 作成된 目錄規則으로 全文이 91條로 된 간단한 規則이었으나 最初의 完전한 目錄規則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Jewett의 目錄規則은 39條로 더욱 간단하나 比較的 알차고 짜임새 있게 構成된 規則으로 全體的인 圖書館網 組織을 생각한 進歩的인 것이었으며, 美國最初의 目錄規則이라는데 意義가 있다. Cutter의 目錄規則은 個人이 만든 것으로는 가장 뛰어난 것이었으며, 最初의 辭典目録規則인 동시에 辭典體目錄規則

으로써 지금도 그의 理論이 널리 통하고 있으며, 그 후 作成된 모든 目錄規則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ALA目錄規則은 사실상 1883년에 시작되어 1949년에 完結된 規則으로써 著者 및 書名著錄에 대한 規則과 記述에 관한 規則을 나누어 ALA와 LC에서 각각 出版하였고, 完全히 現代目錄規則으로서의 體裁와 面貌를 갖추었다. 英美目錄規則은 分離되어 出版된 著者 및 書名著錄을 위한 規則과 記述에 관한 規則을 統合하여 單一本으로 하고, 1961年の 方針原則과 더불어 英語使用圈內의 國家의 目錄作成에 있어서 書誌記述形式의 標準化에 크게 寄與하였고, 英美目錄規則 第2版은 國際標準書誌記述法의 영향을 받아 이전의 規則을 完全히 再整理하고 再編成하여 體系化시켰으며, 機械化處理를 위한 革新的인 句讀點의 採用과 記述事項의 統一트 말미암아 英語使用圈內의 國家들 뿐만 아니라 世界書誌統整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期待된다.

이상에서 論及한 目錄規則들의 變遷과 發展狀을 보다 具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諸目錄規則 중의 書誌記述事項 가운데 書名著者表示事項에 대한 記述形式 條項만을 相互 比較分析한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現在의 AACR 第2版에서 豫備規則으로 다루고 있는 句讀點事項은 Jewett 目錄規則의 第2條의 解說條에서 “標題紙의 句讀點은 存續시켜야 한다”고 처음으로 言及하였고, Cutter의 目錄規則에서 最初로 規則化하여 比較的 詳細히 規定하였으나 LC 目錄記述規則에서는 다시 一般的인 慣例에 따른다고만 간단히 規定하였다. 그러나 AACR에서는 附錄으로 다루어 각 句讀點을 適用되는 事項別로 分類하였고, 第2版에서는 ISBD를 基礎로 하여 國際間 言語의 障壁을 超越하고 機械化處理를 目的으로 종래의 句讀點을 全面改訂하여 書誌情報活動의 國際的 通用에 寄與하게 되었다.

2. 本書名(title proper)이라는 말은 Cutter의 規則에서 처음 使用하였고, 이전에는 一般的으로 ‘書名’으로만 表記하였다. Panizzi의 規則에서 “標目 다음에 記述하며, 本來의 바른 綴字를 그대로 保存한다”고 規定한 原則은 Cutter의 規則에서 書名語의 順序만을 強調하고, 類例 없이 短縮과 省略에 대해서 強調하였으나 LC 規則에서 다시 採用되어 現在까지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으며, 標目과 書名에 대한 行의 分離는 Jewett 目錄規則에서 처음 規定하였다. 또한 Cutter의 目錄規則에서 처음 規定한 別書名에 대한 規則은 본래 “別書名은 둘 다 記錄한다”고 規定하였고, LC規則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AACR 第2版에 와서 本書名의 一部로 취급하여 그 概念을 變質시켰다.

96) loc. cit.

3. 一般資料指定表示는 AACR 第2版에서 처음 規定한 事項으로 情報傳達媒體의 多樣化로 急激히 增加하는 特殊形態의 資料와 一般資料를 區別하는데 사용하나 任意的인 追加事項으로 되어 있다.

4. 對等書名에 관한 概念 역시 AACR 第2版에서 처음으로 導入한 事項으로 다른 言語와 또는 字體로 된 本書名을 意味한다. 對等書名은 主情報源의 配置나 順序에 의해서 指示된 順으로 本書名 다음에 記錄하며, 段階別 記入法을 適用하여 2段階를 適用할 경우에는 첫 번째 對等書名만을 記錄하고 第3段階 記述에 있어서는 모든 對等書名을 轉記하며, 그 表示는 等號(=)로 하도록 하였다.

5. 其他書名情報는 AACR 第2版의 豫備版에서만 해도 對等書名, 其他書名 및 其他書名情報로 하여 單一要素로 취급하던 것을 別書名은 本書名의 一部分으로 취급하고 一般의으로 美國社會에서 副書名이라고 알려진 其他書名만을 其他書名情報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本書名과 對等書名 이외에 著作에 記載된 어느 書名, 또한 本書名·對等書名 또는 其他書名에 관련되어 記載된 어느 節, 著作의 性格, 內容 등과 그것의 生産이나 出版의 理由 및 動機를 나타내는 節까지도 標題紙에 記載되어 있을 경우에는 其他書名情報로 하여 記錄하도록 하였다.

6. 著者表示는 Panizzi의 規則에서는 書名 다음에 著

者表示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匿名의 出版物에 한해서 그 著者名을 알 수 있으면 角括弧에 挿入해서 書名 다음에 記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Jewett의 規則에서는 처음으로 記述部에 著者表示를 編入시켰고, 編輯者 및 翻譯者·註釋者·續刊者까지 著者의 範疇를 擴大하였으나, Cutter의 規則에서는 單一著者의 著作인 경우 書名 다음에 著者表示를 한다는 規定이 없으며, 標目으로 選擇되지 않은 編輯者나 翻譯者만을 記錄하도록 하였다. LC의 規則에서는 처음으로 著者表示라는 規則條項을 新設하였고, 單一著者의 著作에 있어서 標目으로 採擇된 이름의 形式과 그 著作에 表示된 이름의 形式이 동일한 경우는 著者表示를 하지 않으며, 기타 單一著者의 著作이라도 標目으로 採擇된 이름의 形式과 그 著作에 表示된 이름의 形式이 다르거나 共著者·翻譯者 등일 경우에는 모두 書名 다음에 그 著作에 關係된 이름을 記述하도록 規定하였고, 이러한 原則은 AACR 初版까지 持續되었다. 그러나 ISBD(M)에서부터 標目部와 記述部를 完全히 分離하므로 해서 書名 다음에 반드시 著者表示를 하도록 하였고, AACR 第2版도 역시 그대로 反映하여 記述部만으로도 完全한 하나의 獨立的인 著錄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書名과의 區別을 斜線으로 하는 독특한 句讀法을 採擇하였다. <完>

### 圖協新刊案内

#### 韓國十進分類法

第1卷 本 表 / 第2卷 相關索引

####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申肅媛·李淳子 共著

#### 韓國의 冊板紋樣

1392-1945 / 鄭炳洸 編

#### 大學圖書館建築計劃

랄프 E. 엘즈워스 / 李炳穆 譯

#### 情報科學과 컴퓨터

수잔 아르탄디 / 李淳子 譯

#### 어린 이 圖書館

안네 플리트 / 金孝貞 譯

### 新刊·既刊 圖書案内

產學社

#### 電算實務시리즈

現代意思決定技法 (Operations Research) 申弘澈 著 4,000원

統計學演習 (客觀式·情報處理) 李貞馥 著 3,700원

電子計算機概論 (Data Processing) 韓允京 編譯 3,200원

FORTRAN IV 韓允京 外 3,000원

經營情報組織論 (MIS) 安世熙 著 近刊

情報處理技士問題集 李鍾哲 韓判岩 共著 4,200원

#### 銀行實務시리즈

어음手票法 李俊相 著 4,000원

金融判例研究 李俊相 著 10,000원

預金去來法 李俊相 著 5,000원

金融法規實務 張亨龍 著 近刊

圖書 出版 產學社

TEL 372-0791  
CPO box 3122